장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03.02. 규정 제1호 개정 2002.03.02. 규정 제2호 개정 2003.10.01. 규정 제3호 개정 2004.03.15. 규정 제4호 개정 2004.05.12. 규정 제5호 개정 2012.02.16. 규정 제6호 개정 2013.02.06. 규정 제7호 개정 2016.02.12. 규정 제8호 개정 2016.09.08. 규정 제9호 개정 2020.02.00. 규정 제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① 이 위원회는 장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②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과 건의 사항
- 9.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학생야영수련,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0.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20.02.00)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9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02.OO)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8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한다.(개정 2020.02.OO)
- 1. 학생 설문조사
- 2. 대의원회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3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개정 2020.02.OO)

-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 ④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4조(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제7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개정 2020.02.OO)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과 전학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0.02.OO)
- 3. 위원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개정 2020.02.OO)
- 4.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개정 2020.02.OO)
-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 6.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8조(위원의 정수)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 정수는 당해연도 3월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당원은 지역위원의 정수 1/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9조(선출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0.02.OO)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개정 2020.02.OO)
 - ③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인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위촉하여 1인으로 한다.(개정 2020.02.00)
 - ④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02.OO)
-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OO)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OO)

- ④ (선거 공보와 투표용지 배부)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선거인단 전체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OO)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⑦ (선거인 명부 작성시)
-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 · 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주민등록상 판별)

- 제12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OO)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OO)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13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 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5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 제16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학생수가 100명미만인 경우 예·결산 소위원회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02.OO)

-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 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8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마련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9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⑥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 제20조(안건의 제출 발의)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21조(의사와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원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의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 교육지 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02.OO)
-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개정 2020.02.OO)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 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OO)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삭제(2020.02.OO)

제27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삭제(2020.02.OO)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 제28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개정 2020.02.OO)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 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0.02.OO)

제33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 3, 2, 규정 제1호)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 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만료된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3. 2. 규정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 1. 규정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15, 규정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12. 규정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16. 규정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6. 규정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와 위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운영위원과의임기를 같이 하기 위하여 새로 선출되는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과 교원위원 1명의 임기는 2014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위원의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있을때는 제8조의 정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보궐 선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02,00)

부 칙(2016. 2. 12 . 규정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8. 규정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O. 규정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